

損害保險 料率算定の 理論과 實務(II)

金 台 坤

(保險開發院 企業保險部長)

IV. 損害保險料率算定業務의 諸 概念

— 以上 今號 掲載 —

IV. 損害保險 料率算定業務의 諸 概念

지금까지 損害保險料率의 一般事項 및 損害保險의 原價計算에 관해서 言及하였다. 卽, 損害保險料率과 관련 保險商品으로서의 特性에서 수많은 契約對象, 各種擔保危險 또한 豫測不許의 非常危險 등에 따른 各種 約款, 規定, 特約, 例外條項, 免責危險 등 多樣한 內容의 相異한 質的差異의 商品은

保險料率算定에 있어서 技術的인 어려움과 複雜함을 惹起시킨다는 점을 言及했으며, 또한, 價格으로서의 特性에서 損害原價인 純保險料가 保險期間終了後 비로소 確定되는 事後的 Cost의 性質을 가지며 이러한 原價의 未來確定性이라는 特性때문에 保險商品 販賣時點에서는 過去の 經驗値를 根據한 確率計算에 의한 豫定價格을 設定하여 商品價格의 基準을 삼으며, 또한 損害保險의 原價計算과 關聯, 一般製造業의 原價構成에 비해 構成要素로서의 異質性 및 原價計算節次의 特殊性 때문에 價格計算의 어려움과 複雜함, 또한 이에 따른 損害保險事業의 獨特한 會計處理方式에 대해서도 言及하였다

이와 아울러 合理的인 事業費 配分基準의 設定이 附加保險料 算定の 根本이 될 뿐 아니라 效率的인 內部經營管理의 指標가 됨을 言及하였다.

以上과 같은 損害保險料率과 關聯, 一般事項 및 特性들은 바로 損害保險事業의 特殊性 및 損害保險의 本質의 一面을 말하는 것으로, 따라서 이 保險商品價格의 決定이나, 保險料率算定 業務는 바로 保險事業者가 保險經營에서 直面하고 있는 가장 어렵고 重要한 問題의 하나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1. 料率算定の 目的

現行 우리 “損害保險料率의 算出 및 檢證基準에 관한 規程”에 의하면 “料率의 算出”이란 保險種目別 또는 危險別로 純保險料와 附加保險料를 算出하여 營業保險料率(料率의 適用條件 包含)을 制定 또는 調整하는 것이라고 規定하고, 料率의 制定 및 料率의 調整에 대한 두가지 基準을 다음과 같이 明記하고 있다. 우선 料率制定時의 算出基準으로는 大數의 法則에 의거 適正하게 計算한 料率 算出基礎에 過去의 經驗統計 또는 이와 類似한 統計를 適用하고 過去의 經驗統計 또는 이와 類似한 統計値가 없을 때에는 外國의 資料 또는 其他 關聯資料 등을 參考로 하여 適正하게 料率을 算出할 수 있고, 이어 料率調整時의 基準으로는 豫定 損害率 및 豫定事業費率과 實績損害率 및 實績事業費率間에 隔差가 큰 境遇(各 種目別 5~10%) 이를 適正水準이 維持되도록 算出한다고 明記하고 있다.

따라서, 新規로 料率을 制定하는 境遇나 또는 既存料率을 調整하는 境遇나, 어느 境遇에도 料率의 算定基準은 適正水準의 料率算定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適正水準의 料率이란 어떠한 水準의 料率인가? 適正한 保險料率算定은 바로 保險經營의 中心課題로서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料率(the ideal rate)이며 適正料率(proper rate)算定이야말로 바로 料率算定の 最大目的이라고도 할 수 있다.

結局, 料率算定の 目的은 理想的이고 適正한 料率의 算定에 있으며, 適正한 純保險料와 適正한 事業費를 算定하여 保險金支給과 會社의 事業費를

알맞게 充當하고 適正한 利潤(reasonable margin)을 남으면서 事業者間 競爭力있는 價格構造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各國에서도 各 保險種目別 適正한 料率算定目的을 達成키 위하여 標準原價制의 導入과 아울러 平均的인 事業費算出을 위한 合理的인 事業費配分基準設定 및 適正利潤을 算出하기 위한 標準利潤 公式 設定등 實際的으로, 理論的으로 많은 研究를 하고 있으며 또한 上記의 標準原價制度의 制定, 合理的인 事業費配分基準 및 標準利潤公式 등에 대한 學界, 實務界間 각종 論爭과 異見은 바로 料率算定業務의 複雜함과 어려움 및 重要性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에 따른 料率算定の 適正基準은 結局 契約者, 消費者, 保險者 모두에게 恒常 不滿이 되고 모두를 滿足시킬 수 없는 이른바 經濟學의 不可能理論(impossible theory)이 適用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理論的으로는 收支에 관한 諸原則 즉, 收支相等의 原則 및 給付·反對給付均等の 原則을 根據한 適正純保險料 算出과 또한 保險料 適正의 原則 및 保險給付 適正의 原則을 根據한 營業保險料의 算出 등이 理想的인 料率算定の 基準이 되고 있고 實務的으로는 이를 根據한 各 保險種目別 保險料 算出基礎의 現行豫定値의 各 構成이 그 適正의 基準이 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2. 料率算定の 原則

上記와 같은 適正料率算定の 目的을 達成키 위하여 各國에서도 保險關聯法 및 關聯規定에 料率算定の 基準을 定해놓고 各 保險種目別 또는 危險別로 適正料率算定을 위하여 非常한 努力을 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의 境遇 各州 保險業法의 가장 標準的인 基準이 되는 뉴욕州 保險業法 保險料率關聯規定에 의하면 “保險料率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부당하게 差別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not unfairly discrimination)하여 事業者間 價格競爭 및 競爭行爲를 조장하고 競爭의 市場與件에 알맞은 料率”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日本의 損害保險料率算出團體에 관한 法律 第9條에 “料率團體가 算出하는 保險料率은 合理的이며 妥當해야 하고 또한 不當하게 差別的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境遇도 上記의 美·日의 原則을 根據로 “損害保險料率의 算出 및 檢證基準에 관한 規程” 第6條 “料率算出의 基本原則”에 料率의 適正性和 公正性이 維持되도록 다음과 같이 明記하고 있다.

- ① 料率은 保險金支給의 確保와 保險事業의 健全한 運營이 維持되도록 合理的으로 算出한다.
- ② 料率은 過度하게 높거나 낮지 않도록 各 危險狀態別로 適正妥當하게 算出한다.
- ③ 料率은 契約者에 따라 差別을 받지 않도록 公評하게 算出한다.

따라서, 各國에서 規定하고 있는 損害保險의 適正料率算定을 위하여 遵守하여야 할 基本原則은

①充分性(adequacy) ②非過度性(not excessiveness) ③公評性(equity)을 3대 基本的 要件으로 規定하고 특히 美國의 境遇는 모든 認可料率은 반드시 지켜야 할 法的 強制事項으로 規定하고 있다.

또, 이 3대 基本的인 要件이외에도 保險種目的 特殊性에 따라 다소 다른 區分이 있긴 하지만 共

通的인 附隨的要件으로는 ①安定性(stability) ②適應性(responsiveness) ③損害防止促進(promotion of loss control) ④非常危險의 對備 ⑤單純性(simplicity) 등이 있다.

이와 같은 保險料率算定의 諸原則을 基本的要件 및 附隨的要件으로 나누어 詳述해 보기로 한다.

가. 基本的 要件

① 充分性(adequacy)

이 充分性은 用語의 本來의 意味와는 달리 損害補償과 모든 經費를 補償하고 남은 정도의 充分한 料率水準을 策定해야 한다는 意味가 아니라 保險者가 保險契約에 約定된 保險金 支給 義務를 履行할 수 있을 만큼 充分하고 또한 引受한 危險을 管理하는데 필요한 諸經費도 支出할 수 있는 만큼 充分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雙務有價契約 또는 條件附契約이라는 保險契約의 本質에 따른 兩 當事者間의 義務—保險契約者의 保險料支給義務, 保險者의 保險金支給義務—履行에 따르는 “充分性”을 意味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充分性”은 保險契約의 本質上의 義務를 履行하려는 最小限의 要求(minimum requirement)로써 該當種目的 料率이 不合理하게 낮아, 이러한 最小限의 要求를 充足시키지 못할 境遇에는 同料率을 充分한 料率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充分性”은 保險價格이 證券當 個別原價 또는 個別契約의 單位別로 考慮되는 것이 아니라 多數의 同質危險集團을 單位로 保險事業의 繼續性和 長期性を 前提로한 平均値의 價格으로 決定된다는 事實을 前提로 하여 認識해야 한다.

즉, 保險의 原理인 確率計算과 多數의 法則이

適用되는多數 同質危險의 存在와 期間의 長期性을 前提로 損失이 많은해는 損失이 적은해에 의하여 損失의 差異가 相殺되는 平均値를 考慮한 “充分性”이라는 것이다.

美國의 境遇, 이 “充分性”은 各種 約束履行을 遂行하는데 必要한 保險費用을 堪當할 만한 程度의 充分性(adequate to insurance cost)을 말하고, 여기에는 投資收入을 勘案하여 豫想 保險金과 經費를 適切히 支給할 수 있다면 同料率은 充分한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또한 不合理한 料率競爭을 防止하고, 支給不能에 對備한 保護裝置로서 뿐만 아니라 大會社가 競爭力이 약한 會社의 契約을 掠奪하는 手段으로서 利用되는 것에 대한 考慮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지 美國의 境遇 “同料率을 계속 使用 때에는 保險社의 支給能力을 위태롭게 할 境遇 (Continued use of it would endanger solvency of the insurer)에 이 “充分性”이 考慮된다고 하나, 지난 20여년동안 實質적으로 保險料率이 낮아 保險社가 支給不能(insolvencies)에 빠진 경우는 없고 다른 要因에 의해 支給不能이 問題된 境遇는 있었다고 調査報告되고 있다.

이 原則은 또한 不合理하게 낮게 策定된 料率로 競爭會社의 契約을 奪取하기 위하여 또는 現金取得을 위한 保險引受(cash flow underwriting)의 手段으로 利用되어지는 事態를 豫防하기 위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이 “充分性”은 保險營業을 위한 價格面에서의 保險社間의 善意의 競爭과 相互協力の 基準線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自律化趨勢에 따라 該當 種目的 料率競爭에 있어서 各社가 最小限으로 지켜야 할 基準線 또는 自由競

쟁에 따른 限界線으로서 基準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過度性(excessiveness)

이 “過度性”은 前述한 充分性(adequacy)이 保險者의 保險金支給 義務에 따르는 保險契約者에 대한 最小限의 要求(minimum requirement) 즉, 料率의 下限線임에 대하여, 이는 保險者가 料率算定時 너무 過度하게 不合理하게 높게 策定해서는 안된다는 料率水準의 上限線을 말한다.

이러한 上限線은 該當種目的 料率이 不合理하게 높게 策定되어 있을 境遇는 물론 特定保險에서 合理的인 料率의 競爭이 없을 境遇도 包含된다.

특히 이 “過度性”이 問題가 되는 것은 保險의 特性으로 인한 公正去來法 適用排除에 따른 保險社들의 特權으로서 또는 正當한 共同行爲로서의 協定價格이 結果적으로 높게 策定되어 이에 대한 保險契約者들의 不平不滿이 있는 境遇이고, 또한 한 개 또는 小數의 保險社가 特定保險種目に 대한 그들의 獨占의 支配權을 濫用하여 特定保險分野에서 合理的인 競爭의 餘地가 없을 경우의 두가지이다.

그러나 後者の 境遇 어떤 特定 種目に 대한 料率이 비록 높은 利益을 낼지라도 合理的인 水準의 競爭이 이루어진 때에는 同料率은 過度한 것으로 看做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 “過度性”은 保險의 市場性을 考慮한 要素이기도 하다. 아무리 保險이 必要하더라도 料率이 不當하게 높아 保險契約者가 이를 購入할 수 없다면 保險의 效用이란 면에서 아무런 所用이 없게 되는 것이다. 保險의 價格은 낮을수록 利用者가 늘어나 그 社會의 經濟的地位도 向上될 수 있고 保險市場의 擴大를 통하여 保險思想 擴大普及

과 아울러 保險에 대한 認識 轉換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料率算定者와 認可當局의 立場에서 이 “過度性”을 重要視해야 할 것은 특히 우리의 境遇 料率算定이 總保險料(gross rate)에 대한 比率로서 算定되고 認可되기 때문에 契約者 立場에서는 항상 不合理하게 높게 適用된다는 점이다. 損害原價인 純保險料의 決定은 過去의 實績統計 뿐만 아니라 現在의 損失狀況 기타 將來 發生할 損失에 대해서 影響받을 要素를 充分히 考慮하여 그의 決定은 이루어지나 純保險料部分의 引上比率만큼 事業經費 및 利潤率의 同一比率로 引上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保險種目에 따른 保險會社의 合理的 事業費配分基準 및 標準利潤公式設定은 合理的인 附加保險料 決定基準의 根據가 될 뿐만 아니라 이 “過度性”의 基準을 決定하는 要素가 되기도 한다.

③ 公正性(equity)

이 “公正性”은 料率算定時 算定對象이 되는 모든 危險을 同種, 類似危險(保險種目에 따라 物件別, 地域別, 級別, 業種別, 品目別, 條件別등)별로 分類하여 危險別, 過去實績, 現在 狀況, 未來趨勢 등을 勘案, 損害率, 事業費등이 公正하게 適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危險別의 合理的인 分類에 따라 公正하게, 差等있게 料率(fair discrimination)을 適用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 危險別 不當한 差別을 해서는 안된다(not unfair discriminations)는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保險料率算定過程은 結局 同種, 類似 危險集團에 속하는 “契約者들 間의 分擔金”(dividend of risks group) 形態로 決定되어 지

는 바, 各 危險集團에 속하는 契約者에게 保險料 負擔에 있어서 不當한 差別(unfair discrimination)이 아닌 公正한 分擔(fair share)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公正性原則은 結局 危險別 “公正한 差別(fair discrimination)”과 “不當한 差別(unfair discrimination)”의 基準으로 評價되는데 美國의 境遇 이의 基準은 “어떤 料率이 豫想되는 損害와 事業費面에서 公正하게 差異를 反映치 못하고 同一한 等級에서 다른 料率이 適用되는 境遇 이는 不當한 差別인 것이다.

料率이 合理的으로 正確하게 差等を 反映하고 있는 한 相異한 損害發生要素와 事業費에 따라 契約者에게 差等料率을 適用한다면 그것은 不當한 差別이 아닌 것이다. 만약 料率이 團體나 包括證券으로 付保된 사람들간에 광범위하게 平均化되어 있다면 同料率은 不當한 差別이 아닌 것이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上記의 公正한 差別(fair discrimination)이나, 不當한 差別(unfair discrimination)이냐의 基準은 어디까지나 同 - 危險集團에 속하는 保險契約者들에게 損害危險度에 相應한 保險料를 負擔시킨다는 數理的公正性(actuarial equity)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保險의 相扶相助의 基本精神이나 保險의 公的, 社會的 機能에 따르는 富의 分配 側面에서 被保險者 個個人의 支給能力에 相應한 差等있는 保險料의 支給이 要求되는 바 여기에 既存의 數理的인 公正性에 대하여 새로운 概念인 社會的 公正性(social equity)의 問題가 提起된다.

美國의 各種 不良危險割當制度(assigned risk plan)나, 醫療保險, 年金保險, 失業保險, 기타 社會

保險등은 數理上의 公平性보다는 일부 低所得層에 低廉한 費用으로 保險惠澤을 주도록 配慮해 保險의 國民經濟機能의 一部를 遂行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 社會的 公正性概念은 비록 社會保險이 아니더라도 例를 들면 零細漁民들의 小型船舶이라든가, 自動車 保險의 境遇 自營零細 個人택시들의 境遇 그들의 損害率實績만을 갖고 反映하는 數理的인 公正性보다는 低廉한 社會的인 公正性을 幷料率로 保險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保險制度의 公的, 社會的 機能을 考慮한 料率算定上의 配慮인 것이다.

나. 附隨的 要件

上記의 基本的 要件은 料率算定에 있어서 다소 抽象的이고 原論的인 適正料率의 基本原則을 말하는 것이나, 適正料率에 關한 限, 保險契約者, 一般大衆, 保險者등에 따라 그 “適正”의 要求와 見解가 다르고 또한, 各 保險者의 多樣한 現實的인 去來慣行 및 Service次元 또는 營業販賣戰略에서 契約者와의 調和가 必要하여, 事業上 調整된, 또는 容納될 수 있는 料率算定의 基準이 또한 必要한 바, 바로 이것이 料率算定時 業務上 考慮해야 할 要件인 바, 이를 事業上 要件 또는 基本的 要件에 反해 附隨的 要件이라 일컫는다.

① 安定性(stability)

“安定”이란 用語만큼 日常生活에서부터 學術的 用語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하게 使用되는 用語는 드물것 같다.

辭典을 보면 學術的 意味에서의 “安定”의 本來의 意味는 “技術的, 工學的”인 것으로서 工學的인 意味의 “安定性”은 ①自然의 災害 ②産業勞動의 事故 ③社會環境의 公害 등에서 人間을 지키는 것

을 第一로 하여 이 目的을 위해서 人間의 教育을 通하여 安定性을 높이는 일과 安全한 機構나 裝置의 開發, 安全을 維持하기 위한 規制등을 考慮하는 것이라고 說明하고 있는데 이러한 學術的 意味로서의 安定性의 本來의 意味가 保險料率算定의 側面에서도 그대로 維持되는 것 같다.

즉, 保險이란 未來의 不確實하고, 우연한 各種災害, 事故등의 危險으로부터 機械나 企業, 人間自體에 安定性을 附與하는 것이 그 機能의 一部라면, 이러한 安定性 保障과 確保에 따른 대가로서의 保險料는 그 算定過程, 運用過程이 또한 當然히 安定性 있게 處理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단 合理的으로 算定된 保險料率은 特別한 理由가 없는 한 短期的으로는 現狀態로 安定性있게 維持運用하는 것이 保險制度의 信賴性, 契約者 保護側面에서도 바람직하다.

만약, 保險料率이 자주 變動되거나 갑자기 改正된다거나하면 保險加入者들은 保險制度自體에 幻滅을 느끼거나 또, 不滿스럽게 여길 것이다.

이러한 側面에서 자주 變更되고 갑작스런 衝擊的인, 料率算定은 安定性을 確保한다는 保險原理 側面에서나 保險契約者의 不安을 加重시킨다는 意味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料率算定過程이나 過去의 實績 및 未來의 趨勢등에서 事前·事後的으로 考慮되는 要素중 이러한 衝擊的이고 不安한 算定要素들을 除去하는 것이 保險契約者側面에서나 保險事業者側面에서 共に 保險料率算定時 考慮해 보고자 하는 意圖인 것이다.

料率의 安定性을 圖謀하기 위해서 各國에서는 몇가지 算定技法들이 使用되고 있는바, 信賴度係數 適用이나 安全率의 概念導入등이 그 代表的인

技法이라 할수 있고 또한 急激한 引上引下幅의 調整, 遞減率 適用, 統計期間의 長期設定등이 바로 그것이다.

料率算定側面에서의 安定性を 考慮한 安定要素들은 우리의 各種規定에도 詳細히 反映되고 있는바, 現行 損害保險料率調整指針 第5條(料率調整要因의 算出)에서 修正損害率이나, 安全率을 使用하거나 또, 同指針 第7條(調整率의 決定)에서 段階的 遞減率을 適用하고 1회 調整 最高 限度를 25%로 하는 것은 바로 料率의 安定性を 考慮한 側面이기도 하다. 또한, 海上保險料率算定指針에서도 第8條(安全率), 第9條(調整率算出) 등으로 補完되고 있다. 그러나, 料率算定の 側面에서 가장 重要하게 考慮해야 할 安定性 圖謀의 方法은 各種統計에 대한 信賴度係數를 活用하는 것으로 料率安定性を 考慮하는 上記한 規定上의 各種 條項들의 合理性, 妥當성이 계속 問題되고 있는 現實에서 各種統計 要素들에 대한 保險種目別 信賴度係數에 대한 研究가 密度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② 適應性(responsiveness)

이 原則은 安定性(stability)의 原則에 對應되는 概念으로서 安定性的의 概念이 料率은 比較的 短期的으로는 安定되어야 한다는 原理이지만 長期的으로는 料率算定の 基本原則에 따라 充分性(adequacy)의 原理에 不適正할 때에는 料率은 引上되어야 하고, 過度性(excessiveness)의 原理에 어긋날 때에는 料率은 引下되어야 한다는 점을 強調하고 있다.

따라서, 이 適應性(responsiveness)은 新規契約에 대한 料率의 制定이라기 보다는 既存料率의 調整 또는 更新契約料率의 算定時 利用되는 原則으

로 過去의 經驗統計에 의한 實績值를 根據로 伸縮性있게 運營해야 한다는 原則이다. 料率의 適應性을 고려한 要素들은 料率算定時 여러가지 形態로 反映되고 있는데 우선 보다 現實的인 料率水準의 反映의 한 措置로 經驗統計의 實績值中 最近숫자에 대하여 加重值를 부여(weighting system)함으로써 보다 伸縮性을 圖謀하기도 한다. 또한 이 適應性(responsiveness)은 단순히 過去實績만을 考慮의 對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料率算定技法上 向後 趨勢率(trend factor)을 反映시킴으로써 料率의 適應性을 한층 더 圖謀하는 手段으로 하며, 나아가서는 該當算定種目の 算出基礎가 되는 豫定值 構成 自體를 變更시켜 料率의 適應性 및 彈力性을 더욱 圖謀하기도 한다.

그리고, 各 保險種目에서 實施하는 割引割増制度등도 이 適應性을 事後的으로 補完하는 要素이기도 한데, 日本의 MICA에서 使用되는 G.R.R (Good Record Return)制度, 輸出入積荷保險에 使用되는 NCR(No Claim Return)制度등이 바로 이 原理의 適用을 事後的으로 反映한 制度라 할 수 있다.

또, 이 適應性은 앞의 安定性和 相衡되는 概念이기도 하나 어느 原則을 選擇할 것인가 하는 問題는 該當 保險種目の 特性和 該當契約者와의 關係등을 考慮 料率算定者가 判斷할 問題이다. 一般的으로 所得水準, 賃金, 物價의 變動등이 料率에 直接影響을 미치는 自動車保險 및 一般 賠償責任保險등의 境遇 料率算定技法上 이 適應性的의 原則이 優先 되어야 할 것 같고 그의 一般財產保險의 境遇에는 이 適應性보다는 安定性的의 原則이 優先 되어져야 할 것 같다.

③ 損害防止促進(promotions of loss control)

保險의 本來機能이 偶然의事件에 起因하는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經濟的 損失을 補償해 주는 것이 主目的이긴 하지만 事故 發生可能性에 대한 事故 未然防止對策과 아울러 事故發生時 損失을 最小化하고 그것의 輕減을 試圖하는 모든 活動도 個別保險契約者 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保險事業者側面, 國家社會의 側面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損害防止 對策은 損害發生의 減少를 勸獎하는 損害豫防(loss prevention)과 發生된 損害를 輕減(loss reduction)하려는 모든 活動이 包含된다.

料率算定에서 이러한 損害防止를 勸獎하는 여러 가지 方法이 保險種目別 特性에 따라 각가지 試圖되고 있는데 火災保險에서 自動스프링쿨러나 火災消防設備등 火災豫防施設을 갖춘 境遇 또는 良質의 耐久材 施設物에 대하여는 割引料率을 實施하고, 海上保險에서도 積荷指針器 탑재 船舶에 대하여는 合理的인 貨物積載狀態에 따른 該當船舶의 安全運航 및 海難事故의 未然防止次元에서 船舶自體의 保險과 積載貨物에 대한 危險減少要因을 勸案하여 共히 料率의 割引을 할 수 있고, 또한, 自動車保險의 境遇 制動裝置나 衝擊緩和裝置의 性能如何에 따라 料率의 割引이 要求되기도 한다.

이러한 事項들은 成果料率制度(merit rates plan)의 하나인 豫定料率制度(schedule rating plan) 등에서 料率算定時 事前的으로, 具體的으로 反映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諸般 事故防止 活動의 結果 事故發生頻度(loss frequency) 및 深度(loss severity)의 低下는 良好한 實績損害의 結果를 가져와 經驗料率制度(experience rating or prospective experience rating)나 遡及料率制度(retro-

spective or retrospective experience rating) 등을 통하여 事後的으로 反映되기도 한다. 또한 料率이 損害防止活動을 促進할 수 있도록 算定되어야 한다는 要件은 保險契約法上 또는 約款規定上 保險契約者와 被保險者에게 지우고 있는 “損害防止義務”의 本來의 趣旨에도 附合되는 것이다. 즉, 損害의 防止 또는 輕減을 위하여 合理的으로 措置를 講究하는 境遇 必要 또는 有益한 費用은 當該 保險에서 補償되는 損害에 追加해서 保險者가 負擔한다는 趣旨은 그것을 獎勵하는 公益的 理由와 또한 保險事業者의 利益을 위해서도 必要한 바, 이는 바로 保險의 目的에 대한 善良한 管理者로서의 義務를 料率算定上에 具體的으로 反映하려는 試圖이기도 하다.

④ 非常危險에 對備

保險料率算定은 確率原理를 過去 觀察經驗에 適用시킴으로써 어떤 保險者가 將來에 일어나는 確率의인 豫測에 의해서 將來의 保險金과 必要한 事業經費를 推定하여 算定하며 이의 適正性의 基準으로 前述한 3개의 基本的 要件 및 其他 附隨的 要件 등이 考慮되기도 한다. 保險이란 制度의 科學性은 이러한 確率原理를 適用, 多數 同質危險의 平均値를 正確하게 算出한다는 根據에서 立證된다. 그러나, 料率算定者가 아무리 完全한 科學的인 料率算定技法을 發揮한다해도 過去의 與件이 未來와 同一할 수는 없으며, 過去, 未來의 不可思議한 差異를 克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損害原價의 基礎가 되는 過去實績의 平均的인 豫想危險을 超過한 豫測不許의 非常危險이 있기 마련인 바, 例로서 地震, 颱風 등 異常 自然災害에 의한 要因, 技術革新등에 의한 工學的인 要因, 景氣, 物價變動에 따른 經濟的 要因, 國家政

策變動에 따른 政治的 要因, 또한 統計 및 資料의 未備등에 의해 保險의 技術的 限界 등으로 이러한 非常要因들의 存在는 料率算定의 豫測을 빗나가게 함으로써 事後的으로 確定되는 實績值과의 사이에 恒常 乖離 現狀을 일으키게 된다.

事實, 이것이 바로 損害保險料率의 宿命的인 特性이기도 하며, 또한 料率算定者가 恒常 苦心하는 最大 Dilemma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豫測不許의 非常危險에 대한 附加保險料率은 現行 우리의 保險料算出基礎의 附加保險料안에 利益率과 結付해서 總保險料의 5%로써 大部分 種目에서 同一하게 構成되어 있다. 그러나, 이 比率는 該當 種目の 非常危險度에 따른 過去 實績에 대한 數理的 評價와 아울러 該當種目の 資產運用 收入의 程度에 따라 差等的으로 構成해야 할 것이다.

美國의 境遇, 保險種目에 따라 非常危險率과 利益率을 包含하여 2.5%에서 20%까지 附加保險料 構成을 差等的으로 適用하고 있다.

⑤ 單純性(simplicity)

料率制度는 料率規制方式, 料率의 形態 및 그 適用方法에 따라 勿論 差異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어떠한 料率制度라 하더라도 上記의 基本的 要件 및 附隨的인 要件을 充足시킴을 原則으로 하되 可能한 한 簡單해야 하고 또한, 쉽게 理解할 수 있도록 構成되어야 한다.

이는 保險契約者 立場이나 保險事業者 立場에서 모두 必要한 事項인 바, 一般 企業保險 및 巨大危險物件의 保險契約者들은 그들의 保險費用(insurance cost)이 어떻게 決定되며 또한 그것이 그들의 營業原價 計算上에 어떻게 反映되는지 또는 그 處理過程을 詳細히 알고 싶어할 것이며 특히, 家

計保險契約의 境遇, 契約者들에게 募集人들로 하여금 쉽게 說明할 수 있도록 料率體系를 單純化시킴으로써 保險募集活動에 刺戟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時間과 努力을 節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 單純性은 保險契約者들의 料率制度에 대한 理解의 程度에 따라 相對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以上에서 料率算定의 原則에서 基本的인 要件과 附隨的인 要件에 대해서 言及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要件들은 서로 相衝되기도 하며 또한, 料率算定過程에서 調整되기도 한다. 例로서 安定性은 料率의 伸縮性에 背馳되고 保險種目에 따라서는 그 考慮의 比重이 完全히 다른 境遇가 있고 또 安定性은 信賴度에 의해서 調節되나 伸縮性은 算出技法上 趨勢率을 反映하는등 種目에 따라서는 相反되는 基準이 되고 있으며 또, 實際로 다른 目的을 위해서 다른 어느 要件이 희생되는 境遇도 있으나 대개의 境遇는 서로 折衷되는 形態로 使用되어 진다. 料率算定에 있어서 어느 基準을 使用하느냐 하는 것은 算定對象 種目の 特性과 그때 그때의 狀況에 따라 料率算定者가 決定할 問題이다.

料率算定은 恒常 上記와 같은 諸原則에 의해서 여러가지 算定技法을 使用하여 調整하는 것이 一般的이나 恒常 數理的인 結果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境遇에 따라서는 算定對象種目の 特性을 考慮, 擔保範圍의 調整, 除外 및 例外條項 調整, 免責控除金額의 調整, 割引割増制度, Waiting period設定 등 여러가지 方法 등으로 그 目的을 達成하기도 한다.

3. 料率의 形態

損害保險料率은 각 分類基準에 따라 여러가지

形態로 區分되고 있는데 우선 保險事業者 또는 料率算定機關이 算定한 料率의 行政當局에 의한 認可與否에 따라 認可料率과 非認可料率로 區分되고, 保險事業者間 協定の 有無에 따라 協定料率, 非協定料率로 區分되기도 한다.

一般的으로 協定料率은 2개 以上の 保險會社가 料率을 協定하는 一種의 價格 Cartel로서 大部分 認可料率로서 處理되고, 非協定料率은 保險會社別 獨自의 基準에 의하여 使用하는 一種의 自由競爭料率의 性格을 띄고 있으며 保險種目에 따라 다소 例外가 있긴 하지만 大部分 當局의 規制를 받지 않은 非認可料率로서 處理되는 것이 一般的이다.

또한 上記와 같은 各 分類基準에 의해 區分된다 하더라도 該當料率이 適用되는 保險의 目的別 또는 危險要因別로 運用方法에 따라 固定料率(fixed rate), 範圍料率(ranging rate), 勸告料率(advisory rate) 등으로 區分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料率形態가 相互關聯되는 分類에 屬하기도 하여 劃一的이고, 絶對的인 어느 하나의 分類基準으로 區分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料率形態는 나라에 따라 各國別 料率制度에 대한 關聯法根據 및 對象種目에 의해 相異한 分類基準을 하고 있는데 日本의 境遇는 크게 算定會 料率, 業法認可料率로 區分하고, 該當種目에 따라 一定料率, 範圍料率, 標準料率 등으로 分類되며, 美國의 境遇는 各州別, 保險料率規制制度에 따라 ①州制定料率(state-made rate), ②算定機關制定料率(mandatory bureau membership), ③事前認可料率(prior-approval laws), ④變形事前認可料率(modified prior approval laws) ⑤提出後使用料率(file & use laws), ⑥使用後提出料率(use & file laws), ⑦提出不要料率(no-filing laws) 등 7개

形態로 區分하여 使用하고 있으나 州에 따라 上記 形態를 修正 또는 變形해서 區分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앞의 4개 制度와 나머지 3개 制度를 區別해서 競爭의 料率과 非競爭의 料率 兩體制로 大別하고 있는 것 같다. 美國, 日本의 境遇 上記의 區分은 事實 料率의 形態라기보다는 自國의 保險料率 監督體制에 따른 나뉠대로의 料率規制의 한 方式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러나, 料率算定者(rate maker) 立場에서 가장 重要하게 考慮해야 할 區分方法은 料率의 算定技法 및 그 適用方法에 따른 區分으로 그 主要形態는 等級料率(class rate), 個別料率(individual rates), 成果料率(merit & demerit rates) 制度가 있는데 이를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한다.

가. 等級料率(class rate)

等級料率은 集團危險分類에 의한 保險料率算定方法으로써 保險의 基本原理를 가장 確實하게, 適合하게 反映시키고 있는 料率制度라고 볼 수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保險이란 大數法則에 의한 確率計算에 基礎를 두고 成立하는 制度로서 損失發生可能性이 있는 多數의 類似, 同質的인 危險의 存在를 그 根據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等級料率(class rate)은 危險의 大衆性(mass)과 同質性(homogeneity)을 前提로 多數의 同種, 類似危險에 속하는 危險集團全體를 한 分類로 하여 危險의 無差別原則과 公正性原則(equity)을 維持하면서 同一한 保險料率을 賦課하게 되는 것인데 同一類似 危險級別 料率이란 점에서 “同種物件 料率”이라고도 한다.

또한, 이 等級料率은 統計資料의 信賴度를 考慮하여 保險者別 個別資料나 經驗實績值를 한곳에 集中管理하여 수많은 危險중 個個 危險의 損害發

生頻度 및 發生深度에 影響을 미치는 特性에 따라 危險群別로 區分되어야 하는 것이 그 基本이 되기 때문에 協定料率 또는 Cartel料率의 形態를 취하는 것이 大部分이다.

이러한 同質危險別 集團分類는 크게는 海上保險, 火災保險, 自動車保險 등 保險種目別 單位로 區分될 수 있으나 이 級別料率體制는 各 保險種目別 特性에 따라 同種危險을 級別로 細分類하여 同一한 料率로 區分하는데 現行 各 保險種目別의 協定料率書에 區分된 各 危險級別 分類가 바로 이에 該當한다.

例로서 火災保險의 境遇 物件別, 地域別, 級別 등, 海上保險의 경우 品目別, 條件別, 地域別, 自動車保險의 境遇, 車種別, 性別, 年齡別, 經歷別 등으로 區分된다. 따라서, 이 級別料率은 이렇게 種目別 分類된 危險과 該當料率을 冊子(manual)로 만들어서 保險契約者 및 募集者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의 業務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Manual Rate라고도 한다.

이 等級料率은 現行 各 保險種目別 協定料率書를 使用하는 大部分 損害保險種目에서는 이 方法을 使用한다. 따라서, 協定料率에 의한 料率書 適用料率이기 때문에 적은 費用으로 쉽게 利用될 수 있고, Underwriting에 덜 熟練된 사람도 쉽게 理解될 수 있는 長點도 있으나 料率體系의 單純性 또는 硬直性으로 인하여 同一等級에 該當하는 모든 個別 契約者에게 伸縮性 있게 부응할 수 없다는 短點이 있다.

卽, 이 級別 料率에 의해 同一分類에 속하는 危險에 適用되는 料率은 平均值 料率(average rate)이기 때문에 이 平均值를 中心으로 上·下의 危險間에는 다소 不公平을 免할 길이 없는 것이다. 問

題는 이러한 危險間 不公平을 最小化하기 위하여 危險을 더 細分化(subclassification)하여 料率算定의 基本的要件인 危險別, 公正性(equity)原則을 維持하여야 하나, 이러한 要件에 充實하기 위해서 危險의 分類를 많이 하면 할수록 大數의 法則 適用을 위한 統計集團의 信賴性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 級別料率(class rate)은 危險의 合理的 細分類에 따르는 料率의 公正性原則과 多數 同質危險에 대한 統計의 信賴性原則을 어떻게 調和 있게 維持하느냐 하는 것이 最大의 問題點인 것 같다.

나. 個別料率(individual rate)

이 形態의 料率은 等級料率(class rate)의 前提가 되는 多數의 同質危險이 存在하지 않거나 또는 特殊한 危險을 가지고 있는 物件에 대하여 使用하는 料率體系로서 個個의 危險의 特殊性和 經驗을 토대로 結果적으로 每料率等級에 단지 하나만의 保險目的物이 存在하는 것을 根據로 하여 成立하는 일종의 特別料率이라고 볼 수 있는 料率體制이다.

一般的으로 個別料率이라고 할때 바로 Underwriter에 의한 判斷料率(judgement rate)이라고 規定하는 境遇가 많으나, 이 個別料率에는 分明히 다음 두가지 形態로 區分되어 진다.

그 하나는 每 個別危險單位別로 料率을 計算하는데 使用되는 共通된 料率算出表(rating schedule)을 根據로 하여 危險單位別로 料率을 算出하는 것으로 每危險別로 大數의 法則을 適用하기에는 同種, 類似危險이 不足하고, 個別危險料率을 適用하기에는 共通된 特徵이 있는 物件, 例로서 火災保險에 付保되는 大部分의 工場과 産業用 建物

(commercial and industrial properties) 등은 제각기 別個의 設計圖에 의해 設計되어, 建築되며, 構造적으로 또는 收容物과 事故豫防施設등이 正確하게 똑같은 境遇는 드물다. 그러나, 이러한 物件들은 비록 그 構造, 收容物, 消防施設등이 相異하더라도 過去의 類似物件에 대한 損害發生頻度(loss frequency)와 損害發生深度(loss severity)에 影響을 미치는 特性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그 結果에 대하여도 合理的인 正確성을 갖고 推定할 수가 있다. 이러한 危險들에 대하여는 每 危險單位別로 料率을 計算하는데 使用하는 共通된 料率算出表(rating schedule)를 作成하는 것이 可能하다. 물론 이런 算出表는 細部的인 面에서는 相當한 差異가 있을지라도 基本的으로는 하나 또는 그 以上の 基本料率(basic rate 또는 key rate)로부터 시작하여 最終料率(final rate)은 基本料率에 대하여 建築構造, 收容物, 消防施設 및 危險程度 또는 防火施設 優秀程度에 따라 割引割増을 하게 된다는 共通의인 特徵을 갖고 있다.

이 料率算出表는 주로 産業 및 商業用 建物の 火災保險 料率算定時 使用되는데 이에는 몇가지 長點을 갖고 있다.

첫째, 料率表를 使用함으로써 料率의 統一성과 公正성을 促進한다. 둘째, 被保險者로 하여금 料率이 어떻게 計算되어 決定되고 損害豫防措置를 통하여 어떻게 料率을 減少시킬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셋째, 合理的으로 整形화된 表에 따라 計算된 料率은 被保險物件의 損害危險度를 보다 正確하게 反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料率算出表(rating schedule)의 使用은 危險度에 따른 割引割増을 定하는데 있어 多數 專門家들의 判斷을 모을 수 있도록 해 준다. 割増

과 割引은 統計的인 損害經驗에 根據를 두는 것이 아니라 經驗있는 關聯技術者와 Underwriter들의 判斷에 주로 根據를 두고 있다.

一般的으로 火災保險에서 널리 使用되는 料率算出表에는 오래된(1892) 商工物件料率算出表 “Universal Mercantile Schedule”과 “Dean Analytic Schedule”이 있고 I.S.O에서 小規模 商業用 및 非製造業體의 物件에 適用하는 새로운 火災保險料率算出表 “Commercial Fire Rating Schedule”이 있다.

또 다른 하나의 個別料率算定方法으로는 判斷法(judgement method)인데 여기에는 具體적으로 두가지 形態로 區分되어진다. 첫째는 上記의 個別料率算出에서와 같이 料率算出表(rating schedule)를 使用하기에는 危險種類가 多樣하고, 可變性이 많은 海上保險, 內陸陸上保險등에서 使用하는 方法과 또 하나는 過去의 어느 保險者도 引受해 본 經驗이 전혀 없는 새롭고(new) 異質的인(heterogeneous) 巨大危險(catastrophic risks)에 대한 方法으로 區分되는데 이들 危險에 대하여는 保險者(underwriter)의 直感, 經驗, 推理, 統計등 各種 判斷要素(judgement factor)을 根據로 個個 危險의 特性을 세밀히 檢討한 후 그들의 主觀의 判斷에 따라 料率을 算出하기 때문에 이 方法을 Underwriter Judgement method라고도 한다.

海上危險, 內陸陸上危險등의 境遇 危險自體의 特性과 可變性 이외에도, 外部的 與件 즉, 季節, 氣候, 相對國港灣施設, 風俗, 習慣, 政治經濟狀況 및 當該船舶의 國籍, 船長·船員의 資質, 船種등 수많은 危險要素들에 대한 科學的인 統計分析이 어렵고 또한, 새롭고 異質的인 巨大危險에 대하여도 科學的으로 適正한 保險料率을 算定할 만한 아

무런 基礎統計資料가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Underwriter의 主觀的 判斷에 따라 料率을 算定하는 수밖에 없지만 問題는 이들 該當危險에 對한 適正料率을 算定하기 爲해서 얼마만한 程度의 判斷이 必要하느냐 하는 程度 問題인 것이다.

現實으로 또는 實務적으로 海上保險이나 內陸陸上保險의 경우 이들 危險들에 대한 오랜기간에 걸친 廣範圍한 經驗統計는 나라에 따라 品目別, 條件別, 地域別 等 危險級別 料率(class rate) 또는 수개사에 의해서 共同으로 Manual Rate로 使用되고 있으며, 또 아무리 새롭고 異質的인 危險이라 하더라도 類似同種危險에 대하여 料率算定機關에서 蒐集分析한 過去 經驗統計資料가 個別 Underwriter들의 判斷에서 가장 重要한 要素로 活用되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다. 成果料率制度(merit rates plans)

成果料率制度는 앞의 集團危險分類에 의한 級別料率(class rate)과 個別危險分類에 의한 個別料率(individual rate)을 折衷한 形態이다.

一般的으로 同一料率을 適用받는 危險集團內에서도 個個危險物件別 中心으로 보면 危險間에 顯著한 差異가 있기 때문에 等級料率 또는 Manual 料率은 特定被保險物件에 適正한 水準의 料率을 適用하는데는 限界가 있다.

따라서, 統計의 信賴度를 附與할 수 있을 程度로 保險料 規模가 큰 契約에 대해서는 이러한 個別危險度를 反映하여 等級料率 또는 Manual 料率을 調整 또는 修正할 수 있는 成果 料率制度가 活用되고 있다. 이 制度는 一般的으로 等級料率로부터 시작한 다음 個別 特定 被保險者에 대한 實績 値와 豫定値를 根據로 上向 또는 下向 調整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個別 被保險者에 대

하여 損害防止를 勸獎하고, 또한 特定被保險物件의 擔保危險에 보다 正確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嚴格히 말해서 이 制度는 料率算定技法上에 의한 別個의 料率形態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成果料率制度에는 豫定料率(schedule rating), 經驗料率(experience rating), 溯及料率(retrospective rating)등 3가지 主要形態가 있다.

① 豫定料率(schedule rating)

豫定料率制度는 同一分類에 속하는 同質的(homogeneous)인 危險의 過去 經驗에 따라 保險料率을 算出해 놓은 다음 個個 危險의 特異性 즉, 危險의 技術의 特徵에 따라서 危險集團을 基礎로 算出한 料率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 制度는 통상 料率算定機關에서 算出하는 Class Rate에 彈力性을 附與하고, 個別 被保險物件의 危險特性에 適合한 料率을 適用하기 위하여 Manual Rate에 勘案되지 않는 要素, 즉, Underwriter의 經營이나 損害防止活動과 같은 被保險者의 活動特性에 따라 料率割引(rate credit) 또는 料率割増(rate debit)을 決定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이 制度는 個別料率(individual rate)制度의 하나인 火災保險의 Rating Schedule과는 區別해서 使用되는 制度로써 Rating Schedule에 의한 個別料率이 料率算出에 反映된 危險要素가 大部分 Hard側面에서만 考慮되고 있으나 이 豫定料率에서는 Man-power를 中心으로 한 Soft側面의 危險要素를 反映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同 料率制度의 代表的인 것으로서는 美國의 HPR(High Protective Risk)保險 “A Class Risk와 日本의 特定 割引制度”등이 있다. 그 밖에도 이

豫定料率制度를 活用하고 있는 保險種目は 一般 賠償責任保險, 自動車賠償責任, 勤勞者 災害補償責任保險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豫定料率制度和 다음에 言及하는 成果料率制度중의 遡及料率 및 經驗料率과의 差異點은 後者の 料率이 損害實績 (loss experience)을 基礎로 割引割増을 適用하고 있으나 前者는 損害實績이 아닌 危險實態를 反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制度의 長點은 무엇보다도 事故防止를 獎勵한다는 점이고 短點은 이 制度의 目的에 合當한 料率算定을 위해서는 保險者가 개개의 危險을 일일이 調査해야 하는데 따른 經費 問題이다.

② 經驗料率(experience rate)

이 制度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保險料率의 Merit/Demerit System의 가장 一般的인 形態의 料率制度로서 앞의 豫定料率(schedule rating) 보다 좀더 公式화된 方法에 따라 既存의 等級料率(class rate)을 基礎로 一定한 經驗期間의 被保險者의 損害實績을 根據로 上·下로 料率을 調整하는 方法으로 割引割増制度를 施行하는 大部分 損害保險種目에서 이 制度를 採擇하고 있다. 그러나, 이 制度는 一定한 經驗實績을 그 期間에 適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期間에 適用하기 때문에 現在의 經驗에 立脚한 個別危險의 質的變化에 따른 正確한 料率을 反映치 못하는 弊端이 있을 수 있다. 實績損害가 具體적으로 反映되는 適用期間의 始點

을 中心으로 하여 뒤에 說明하는 遡及料率과 區別하기 위해서 Prospective Experience Rating라고 한다.

③ 遡及料率(retrospective rating)

이 制度는 過去의 實績損害를 根據로 確定된 公式에 따라 料率을 割引割増하는 面에 있어서는 앞의 經驗料率과 類似하나 그 實績損害의 評價對象 期間과 適用期間이 다른 것이 特徵이다.

앞의 經驗料率이 過去의 一定한 評價對象期間의 損害實績으로 다음 期間에 適用하는 것인데 反하여 遡及料率은 現行 契約의 保險期間을 評價對象 期間으로 하여 그 實績을 根據로 最終料率을 調整하는 것이다. 즉, 이 制度下에서는 基本的으로 被保險者의 保險料는 保險期間 終了後 同 保險期間 동안 被保險者에게 發生한 損害와 經費를 勘案하여 一定한 最低保險料 및 最高 保險料 範圍內에서 調整된다. 따라서, 保險者는 保險期間의 始初에는 暫定保險料를 保險契約者로부터 徵收하고, 保險期間 終了時 特定한 危險自體의 實績에 따라 徵收한 暫定保險料를 再調整해서 確定한다.

이 料率制度는 料率의 安全性보다는 適應性에 더 重點을 두는 傾向이 있으며 保險者에게는 相當히 複雜하고 費用이 많이 所要되고 있으나 料率의 公正性이란 見地에서 가장 合理的인 料率制度로 알려져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勤災保險種目에서 一部 適用된 적이 있다.